

## 제 목 : 금융꿀팁 200선 - ㉓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0대 유형별 사례 및 유의사항

- 개인 및 기업(외국환거래당사자)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,
  - 은행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고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는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함
- 또한, 해외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2년 미만 주거 목적인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고,
  -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의 목적(기간 구분 없음)인 경우 은행에 신고하여야 함
- 아울러,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, 금전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
-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·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·거래정지·경고,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,
  - 금융감독원은 83번째 금융꿀팁으로, 법규위반이 많은 대표적인 10가지 유형별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<별첨>과 같이 안내하고자 함
  - 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“파인”(fine.fss.or.kr)에도 게시하고 있음

<별첨> 금융꿀팁 200선 - ㉓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0대 유형별 사례 및 유의사항

## 별첨 금융꿀팁 200선 - ㉓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0대 유형별 사례 및 유의사항

\* 외국환거래법(제22조)상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례를 가공 처리함

### 1 해외직접투자

#### 사례1 1달러라도 해외직접투자하면 신고하세요!

- '12.7.1. 거주자가 홍콩 소재 현지법인 설립을 위하여 10만달러를 송금하면서,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⇒ 과태료(약 115만원)
 

- (관련법규)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(외국환거래규정 제9-5조)
  - (현행 법규상 제재) 검찰통보(위반금액 10억원 초과), 과태료(위반금액의 2%, 최저 1백만원 부과), 경고(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), 거래정지(5년내 2회 이상 위반)

\* 종전에는 위반금액의 1%가 과태료 부과금액이었으나, '17.7.18. 이후 과태료 금액이 상향(위반금액의 2%)되어, 위 사례가 현재 발생할 경우 과태료 2.3백만원 부과 대상
- ☞ (유의사항)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임

#### 사례2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이 변경되면 꼭 보고하세요!

- '13.7.1. 거주자(A)는 동업자(B)와 함께 중국에 현지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고자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(지분율 50%)하고 현지법인 계좌로 2만달러를 송금하였으나,
    - 동업자(B)가 투자를 하지 않아 지분율 100%를 취득(투자금액 동일)하게 되었으나 지분율 변경에 대한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신고를 누락 ⇒ 경고 처분
- (관련법규)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(보고)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신고\*하여야 함(외국환거래규정 제9-5조 제2항)
  - \* 18.1.1.부터 사전 변경신고에서 사후 변경보고로 변경
  - (현행 법규상 제재) 과태료\*(7백만원 정액 부과)
  - \* 신고의무에서 보고의무로 변경되면서 경고 처분대상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변경

☞ (유의사항) 현지법인 투자내용이 변경될 경우 보고대상

**사례3 해외직접투자 후 증권취득보고서를 잊지말고 기한내 제출하세요!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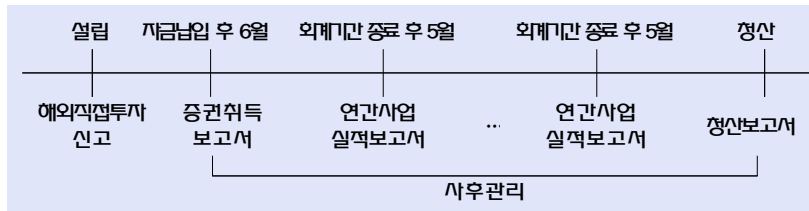
□ '15.12.1. 거주자가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투자금액 납입 후 외국환은행장 앞 **외화증권취득보고서**를 미제출 ⇒ **과태료(100만원)**

- (관련법규) 해외직접투자자는 증권취득보고서, 송금보고서, 청산보고서 등을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함(외국환거래규정 제9-9조)
  - (현행 법규상 제재) **과태료\***(7백만원 정액 부과)
- \* 종전에는 1백만원이 과태료 부과금액이었으나, '17.7.18. 이후 과태료 금액이 상향(7백만원)되어 위 사례가 현재 발생할 경우 과태료 7백만원 부과 대상

☞ (유의사항)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 후 투자단계별로 신고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장 앞 보고할 의무

**<참고> 해외직접투자 단계별 의무사항**

- (신규신고)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앞 신규신고할 의무
  - (변경보고\*)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, 거주자에 대한 현지법인의 지분 양도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할 의무
- \* 과거 변경신고 대상이었으나, '18.1.1.부터 변경보고 대상으로 변경
- (보고)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**외화증권취득보고서, 송금보고서, 연간사업실적보고서, 청산보고서**를 기한 내 외국환은행장 앞 보고할 의무



**2 부동산거래**

**사례4 해외부동산은 매입할 때마다 신고하세요!**

□ '16.7.1. 거주자가 2년 이상 체재 목적으로 뉴질랜드 소재 부동산을 35만달러에 매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 ⇒ **과태료(약 400만원)**

- (관련법규)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(외국환거래규정 제9-39조)
  - (현행 법규상 제재) **검찰통보**(위반금액 10억원 초과), **과태료**(위반금액의 2%, 최저 1백만원 부과), **경고**(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), **거래정지**(5년내 2회 이상 위반)
- \* 종전에는 위반금액의 1%가 과태료 부과금액이었으나, '17.7.18. 이후 과태료 금액이 상향(위반금액의 2%)되어, 위 사례가 현재 발생할 경우 과태료 8백만원 부과 대상

☞ (유의사항) 기존에 보유한 해외부동산의 매각 후 신규 취득시에도 신고대상

- ① 2년 미만 주거목적인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대상이며, ②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 목적인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

**사례5 외국인인 비거주자도 국내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신고해야 해요!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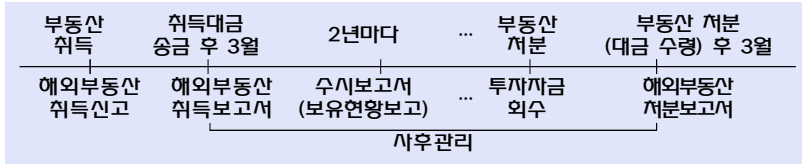
□ '12.11.1. 중국인 비거주자가 중국으로부터 13억원을 송금 받아 제주도 소재 주택을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 ⇒ **검찰통보**

- (관련법규)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물건·임차권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(외국환거래규정 제9-40조)
- (현행 법규상 제재) **검찰통보**(위반금액 10억원 초과), **과태료**(위반금액의 2%, 최저 1백만원 부과), **경고**(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), **거래정지**(5년내 2회 이상 위반)

☞ (유의사항)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「부동산거래신고법」에 따른 신고와 별개로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라 신고할 의무

<참고> 해외부동산거래 단계별 의무사항

- (신규신고) ① 2년 미만 주거 목적인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사항, ② 2년 이상 주거 목적, 주거 이외 목적의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사항
- (보고) 최초 부동산 취득 신고 이후에도 해외부동산취득보고, 수시보고, 처분보고를 일정 기한 내 해야할 의무



3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증권 취득

사례6 비거주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때는 신고하세요!

- '16.8.1. 거주자가 미국 매출거래처인 비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 30만달러 수령의 목적으로 비거주자의 주식 20만주(지분율 0.5%)를 취득하면서,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를 누락 ⇒ 과태료(약 670만원)

□ (관련법규)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(외국환거래규정 제7-31조)

□ (현행 법규상 제재) 검찰통보(위반금액 10억원 초과), 과태료(위반금액의 4%\*, 최저 2백만원 부과), 경고(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), 거래정지(5년내 2회 이상 위반)

\* 종전에는 위반금액의 2%가 과태료 부과금액이었으나, '17.7.18. 이후 과태료 금액이 상향(위반금액의 4%)되어, 위 사례가 현재 발생할 경우 과태료 13.4백만원 부과 대상

- ☞ (유의사항) 지분율 10% 이상 취득은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 투자 신고사항이지만, 10% 미만 취득은 한국은행 총재 앞 증권 취득 신고사항

4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

사례7 외화차입 계약조건을 변경할 때 신고하세요!

- '13.7.1. 영리법인인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10만달러를 차입한 후, 자금사정으로 금전대차 계약을 만기연장하면서, 외국환은행장 앞 계약조건 변경 신고를 누락 ⇒ 경고 처분

□ (관련법규) 자본거래\*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신고(수리)기관에 제출하여야 함(외국환거래규정 제7-4조)

\* 외국환거래규정 제7-4조 제2호 :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

□ (현행 법규상 제재) 검찰통보(위반금액 10억원 초과), 과태료(위반금액의 2%, 최저 1백만원 부과), 경고(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), 거래정지(5년내 2회 이상 위반)

- ☞ (유의사항) ①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\* 앞 신고할 의무

\* 다만, 3천만 달러(최근 1년간 누적차입금액 포함)를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재부 장관 앞 신고할 의무

② 개인,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할 의무

금전대차 유형별 신고기관 현황

구분	통화 종류	신고기관
비거주자로부터 차입	외화	(공공기관, 영리법인 등) → 외국환은행 (비영리법인, 개인) → 한국은행
	원화	외국환은행
비거주자에게 대출	외화 원화	한국은행

## 5 해외예금

### 사례8 해외금융회사에 예금할 때도 신고하세요!

- 거주자가 홍콩 소재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하면서 '17.6.1. 매각자금중 일부인 25만홍콩달러를 홍콩 소재 은행에 예금하였으나,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예금 거래 신고를 누락 ⇒ 과태료(약 50만원)

□ (관련법규)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하여야 함(외국환거래규정 제7-11조)

□ (현행 법규상 제재) **검찰통보**(위반금액 10억원 초과), **과태료**(위반금액의 2%\*, 최저 1백만원 부과), **경고**(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), **거래정지**(5년내 2회 이상 위반)

\* 종전에는 과태료 금액 하한이 50만원이었으나, '17.7.18. 이후 과태료 하한이 상향(1백만원)되어, 사례가 현재 발생할 경우 과태료 1백만원 부과 대상

- ☞ (유의사항) 비거주자 신분일 당시 개설하여 거래를 하였던 예금 계좌라도 거주자 신분으로 변경되었다면, 그 이후의 예금거래에 대하여는 신고할 의무

## 6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

### 사례9 비거주자인 친족에게 증여할 때는 신고가 필요합니다!

- '16.7.1. 거주자(A)가 아들인 외국인 비거주자(B)에게 경기도 소재 2억원 상당의 국내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, 거주자(A)는 한국은행 총재 앞 증여 신고를 누락 ⇒ A에 대하여 과태료(400만원)

□ (관련법규)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(외국환거래규정 제7-46조)

□ (현행 법규상 제재) **검찰통보**(위반금액 10억원 초과), **과태료**(위반금액의 4%\*, 최저 2백만원 부과), **경고**(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), **거래정지**(5년내 2회 이상 위반)

\* 종전에는 위반금액의 2%가 과태료 부과금액이었으나, '17.7.18. 이후 과태료 금액이 상향(위반금액의 4%)되어, 사례가 현재 발생할 경우 과태료 8백만원 부과 대상

- ☞ (유의사항)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거주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하여야 하지만,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예외

▶ 한편, 국내 부동산을 증여받은 외국인인 비거주자(B)도 별도로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

## 7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채권·채무 상계

### 사례10 비거주자와 채권·채무를 상계할 때 꼭 신고하세요!

- '15.9.1.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수출입거래에 따른 채권(20만달러)과 채무(7만 달러)를 상계하면서,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 ⇒ 과태료(약 80만원)

□ (관련법규)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양자간 채권·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하여야 함(외국환거래규정 제5-4조)

□ (현행 법규상 제재) **검찰통보**(위반금액 25억원 초과), **과태료**(위반금액의 2%\*, 최저 1백만원 부과), **경고**(위반금액 1만달러 이하), **거래정지**(5년내 2회 이상 위반)

\* 종전에는 위반금액의 1%가 과태료 부과금액이었으나, '17.7.18. 이후 과태료 금액이 상향(위반금액의 2%)되어, 사례가 현재 발생할 경우 과태료 1.6백만원 부과 대상

- ☞ (유의사항) ①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앞 신고대상, ② 다수 당사자간 상계 등은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